



오인철 회장이 최근 이순선 인제군수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도회, 성금 잇따라 쾌척

### 군청·사회단체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오인철 회장은 지난 18일 인제군을 방문, 이순선 군수에게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평창군도 방문, 심재국 군수에게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과 15일에도 최문순 화천군수와 노승락 흥

천군수에게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방문, 유계식 공동모금회 부회장에게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새해에도 이웃돕기 성금을 지자체와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 회장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건설협회 도회가 작지만 소외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내년부터 시행인데... '깜깜이' 종평제

〈종합평가낙찰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오리무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18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평가기준을 발표한 뒤 12월 초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대안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데다 계약예규를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에 회람 중이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이끌어 온 행자부가 오히려 '깜깜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월 말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

억 이상 공사  
시행령·규칙 감감무소식  
예규案도 아직 안나와  
행자부 어설픈 행정 '혼선'

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까지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마련키로 한 계약예규 최종안도 감감무소식이다.

이후 행자부는 보도계획을 통해 지난 16일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수용 여부는 '깜깜이' 상태가 됐다.

앞서 업계는 11월18일 열린 설명회에서 중대형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정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시범사업

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의 한계 △중소기업이 충족할 수 없는 기술인력과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기준 △40% 수준의 과도한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 기준 △발주처의 형식적인 시공품질평가 결과의 점수 반영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발주기관도 △10년간 공사실적의 사실 확인 △부실별점 반영 여부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전산 시스템 미구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 온 업계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가수주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이지만, 시범사업도 없고 계약예규 개선 논의마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된 중심제도 2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종평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 주간 입찰동향

### 경남 용산~아지 도로 확·포장 등 18건 집행

조달청, 1158억 규모 대기  
LH, 대구신서혁신 A-7BL  
전기공사로 올 입찰 마칩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2.28~31) 경남도 수요의 용산~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모두 18건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주 대비 집행 건수가 66건 줄어들면서 추정가격 기준 총 집행금액도 지난주 대비 3000억원 이상 감소한 1158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0억~300억원 미만 중대형 건설공사 5건이 포함돼 있어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선 오는 29일 251억원 규모의 용산~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각 231억원과 209억원 규모의 진부역 진입도로(호명~용산) 2.3공구 개설공사(수요기관 강원도) 입찰도 이날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경남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수요의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112억원) 입찰을 집행하고 31일에는 106억원 규모의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충남 청양군) 개찰을 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주 집행하는 공사 18건은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통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57%인 662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남도가 각각 441억원과 398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 총 210억원 규모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이번주 추정가격 119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1건을 집행하며 올해 입찰 집행에 마칩표를 찍는다. 올해 대미를 장식할 입찰은 지난주에서 연기된 (공공임대리츠)대구신서혁신 A-7BL 전기공사 8공구(119억원)이다.

봉승권·채희찬기자

아하! 그렇구나

수급인의 채권이 없는데도 도급인이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한 경우

**Q** A사는 B사에 건물 건축공사를 30억원에 도급주었고, B사는 그중 일부 공사를 C사에 10억원에 하도급주었다. B사는 기성금의 일부로 18억원을 지급받고 남은 기성금이 8억원인 상태에서 그 8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D사에게 채권양도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A사에 통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B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하수급인인 C사는 자신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A사에 요청하였다. 이에 A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건이 갖추어졌고 위 채권양도 중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5억원을 C사에 직불하였다. 그러자 D사는 자신의 채권양도는 전액 유효하다고 하며 5억원에 대해 A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확정되었다. 그러자 A사는 C사에 대하여 직불한 5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수급인 B사는 미지급 공사기성금이 8억 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공사대금채권을 D사에 채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A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이 단계에서 B사의 공사대금채권 8억원은 유효하게 D사에 양도되었고, 그 결과 B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B사가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러자 B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5억원을 받지 못한 C사가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A사에 요청한 것인데,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이다. 사례에서는 수급인 B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양도되어 남은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급인 C가 직불 요청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A사는 C사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것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사가 잘못 판단하여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정당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직불하였던 것인데, A사는 채권양수인인 D에게 미지급 채권양수금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잘못 지급한 하도급대금 직불금 5억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잘못 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원을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수급인인지 아니면 하수급인지이다.

이 사례와 같이 수급인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직불을 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하게 되는데, 이 점을 보면 도급인의 직불로써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급인의 채권이 채권양도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 직불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불한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불받은 것은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6다63884).

대법원의 판단은 하수급인 C는 원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직불을 받은 것이므로, 가사 수급인의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하수급인 C가 아니라 수급인 B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자도 B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하수급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